

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8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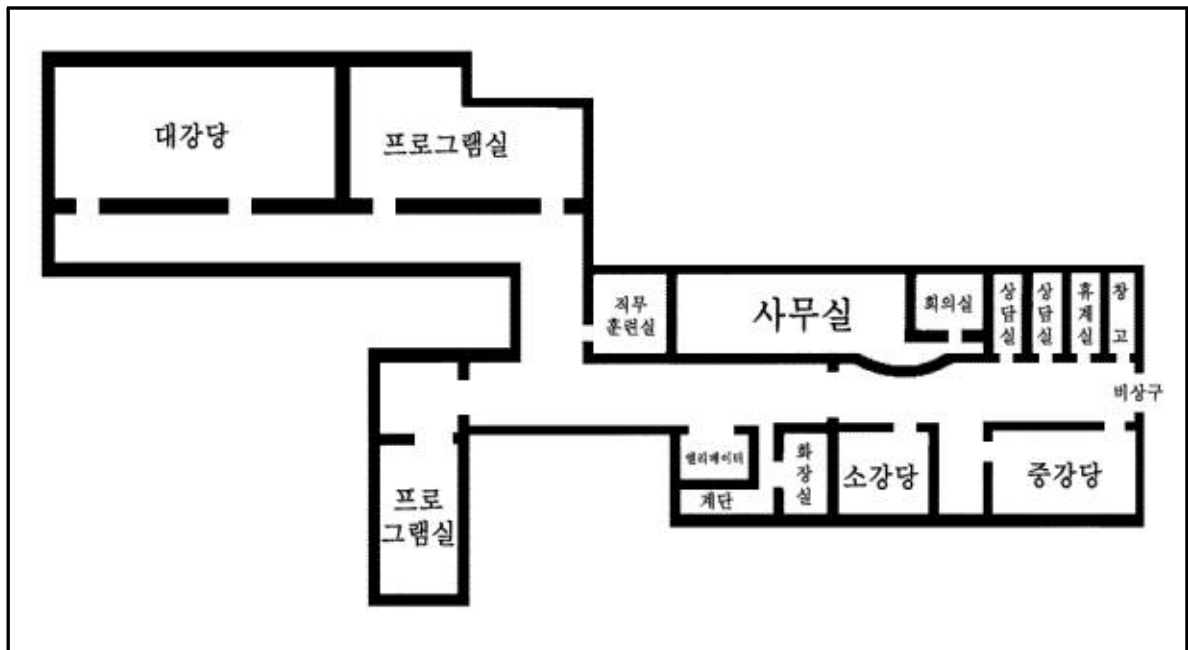
- 가. 그동안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확대를 모색하고자, 지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
- 나. 향후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하고, 발달장애인의 민간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,
- 다.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
- 지원대상 :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

- 지원내용 : 민간사업체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인턴십 참여 지원
- 소재지 : 강남구 삼성동 171-1 본관 2층(舊 서울의료원 강남분원)
- 시설규모 : 1,591.86㎡
- 시설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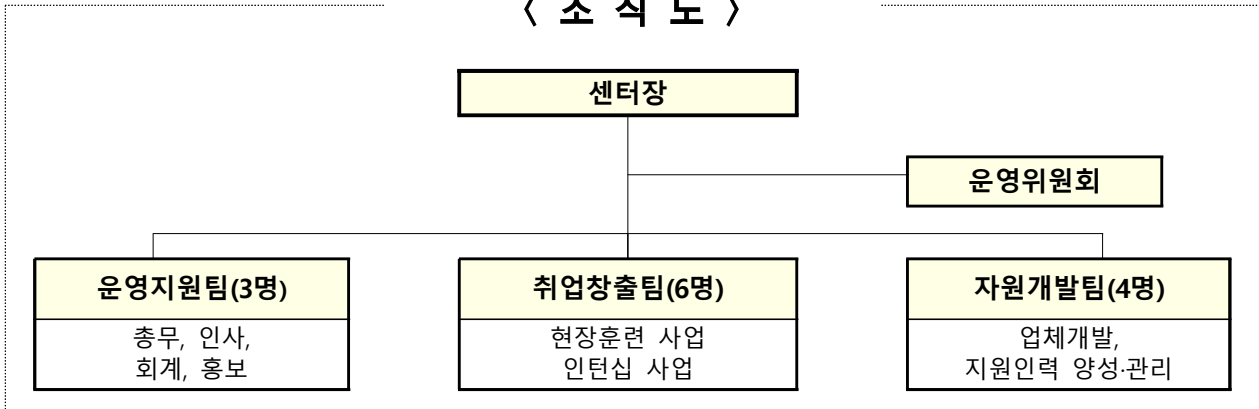
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'21년~'23년)
- 위탁사무 :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
 -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중심 직업훈련, 인턴십 사업 운영
 - 발달장애인 훈련·고용 업체 개발·관리
 - 발달장애인 훈련·고용 지원인력 양성·관리
- 지원사항 : 지원 기준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 지원
- 소요예산 : 1,450백만원('21년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- 조직 및 인력구성(안): 14명(센터장 1, 직원 13)

〈 조직도 〉



다.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」 제8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(장애인복지정책과-8106, '20.4.14.)
- 2020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(조직담당관-6027, '20.5.13.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지난 2년간 발달장애인이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받은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 업체의 호응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, 향후 성과확대가 기대됨
- 그러나, 시범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우수자원 확보 등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어,
-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,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위주의 일자리 지원에서 민간 일자리지원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지원체계를 보완·강화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장애인복지법 제21조

제21조(직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

제8조(장애인 고용촉진)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
 2. 장애인의 희망·적성·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
 3.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·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,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지원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본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원경진 (☎ 2133 - 7466)